

(제 3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주택개발과장

제목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보고

1. 건설부 고시 제203호('90. 5. 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128호 ('91. 5.13)로 개선계획 수립고시된 도봉 제1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2. 지구내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의거 개선계획변경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1. 공시문 1부

2. 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4 안)

수신 : 도봉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제목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통보

1. 주택30420-3410('92.12.16)호와의 관련임

2. 귀구관내 도봉제1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의거 개선계획 변경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 도서를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지적과에 통보할것

첨부 : 1. 고시문 4부

2. 개선계획 변경 도서 4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5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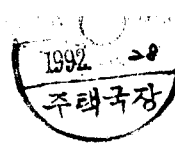
수신 : 수신처참조

원본대조필



제목 :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고시 통보

1. 우리시 도봉제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개선계획 변경도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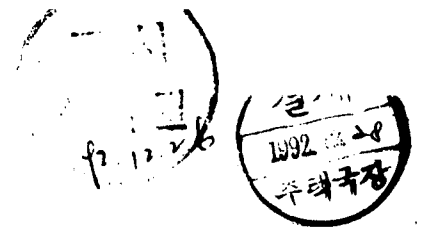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2 호
430



도봉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 변경

1. 건설부고시 제203호('90. 5. 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129호('91. 5.13)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된 도봉제1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2. 지구내 토지이용계획및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에따라 변경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발과와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및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 12.

서울특별시장

가. 지구의명칭 위치및 면적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봉1	도봉구 도봉2동 90일대	58,949	감)399.32	58,549.68	지구추가 384.28(증) 지구해제 164.5(감) 단순면적정정636.1(감) 지적공부누락및 정정 17(증)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1991. 5.11 ~ 1994. 5.10 (3년간)

다.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 별첨(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도봉구 도시정비국 주택과및 도시정비과 비치 관계도서와 같음)

원근기조필

도봉제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가. 도시계획사항의 결정·변경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의 세분화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58,949	58,549.68	감) 399.32	
공동주택용지	42,929	45,182.19	증) 2,253.19	
도 로	8,320	10,160.00	증) 1,840.00	단지내도로포함
어린이놀이터	3,210	1,459.58	감) 1,750.42	
근린공공시설	820	1,147.91	증) 327.91	
체육시설용지	3,670	600.00	감) 3,070.00	

2. 공공시설 정비계획

가. 상·하수도 : 변경없음

나. 근린공공시설진립 : 1동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수용시설	탁아소, 유아원, 노인정 공부방, 관리사무소등	탁아소, 유치원, 노인정 관리사무소등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820㎡	1,147.91㎡	증)327.91㎡

다. 근린생활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복합상가 1층 1,550㎡	지하1층 , 지상3층 3,244.85㎡	증) 1,694.85㎡

라. 주민소득장

기 정	변 경	증 감
500㎡ (복합상가 2층)	483.65㎡ (관리동 지하층)	감) 16.35㎡

마. 도 로 : 변경없음

바. 기타

기 정	변 경
어린이놀이터 6개소, 테니스장 2면	어린이놀이터 5개소, 소운동장1개소

3. 주택의 건설

가. 규 모

구 분	기 정	변 경	
주택건설	규모	5~20층 10동 2,810세대	5~18층 17동 2,810세대
	분양	전용면적 18평이하 1,690세대	소 전용면적 계 1,690 12평 1,242 15평 273 18평 175
	임대	세입자용영구임대아파트 전용면적 7평이하 1,120세대	세입자용공공임대아파트 전용면적 7평 1,120세대

나.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등

구 분	기 정	변 경
공급기준	1세대 1주택공급원칙	서울시주개30420-2281호(92.11.17) 및 주개30420-2407호(92.12.4)로 기승인한 주택공급기준에 따름
공급대상	기준일(89.8.15)현재 당해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와 기준일 현재 당해지구내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공급규모	- 가옥주 : 전용면적12평, 18평분양 - 세입자 : 전용면적 7평 임대	

4. 공공시설확충 및 주민소득원개발 : 변경없음

5.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조달방안

가. 소유사업비의 추정

(단위:백만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62,527.5	99,920.2	
보상비	5,823.5	13,207.2	
공사비	56,749.0	81,834.9	
기 타		4,877.6	지급이자외

나. 국공유지 관리처분방안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전체면적 58,949㎡ 중 55,603㎡	전체면적 58,549.68㎡ 중 54,708.78㎡

다. 사업비 조달방안 : 변경없음

6. 기 타 : 변경없음